#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68

발의연월일: 2022. 4. 22.

발 의 자:최연숙・권은희・金炳旭

김상훈 · 양정숙 · 백종헌

김정재 · 김학용 · 임병헌

조정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국가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교육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 속적·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법 시행령에 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청년층의 자살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층에 대한 자살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를 교육실시 의무기관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자살예방기

본계획 수립 시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법률 제 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중년층"을 "청년·중년층"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3. ------청년・중년층--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 14. (생략) 4. ~ 1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 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상담 다. 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신 설>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u>4.</u>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